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회)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1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하는 한편,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시 법률과 마찬가지로 투자·상생 협력 촉진 과세특례 세액이 가산됨을 명확히 하고,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연결법인 간 결손금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 요건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 상향(안 제28조의2 등)

나. 대도시 법인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인용조문 정비(안 제45조)

다.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시 투상세 가산 명확화(안 제100조의23 제6항)

라. 연결법인 간 결혼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마련(안 제100조의23 제7항부터 제9항)

마. 연결법인 간 결혼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 요건 신설(안 제100조의23 제8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제28조의2제1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 중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을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2025년 1월 2일 이후에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이하인”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후단 중 “각 호”를 “각 호, 제15항 및 제16항”으로 한다.

제100조의2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지방소득세가”를 “법인

지방소득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인지방소득세는”을 “법인지방소득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그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연결법인에 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1. 법 제103조의37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times (B \div C)$	
A :	각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 따라 계산한 각 연결법인별 소득에서 법 제103조의34에 따라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 결손금(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B :	조정 연결산출세액(각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의 합계액에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C :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각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법 제103조의37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D \times (E \div F)$	
D :	결손금 조정세액(법 제103조의35제1항에 따른 연결산출세액에서 제1호의 계산식 B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E :	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공제액(「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 합쳐진 결손금과 법 제103조의34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F :	총 결손금 공제액(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공제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3. 법 제103조의37제7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연결법인: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법인별 연결산출세액을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⑨ 법 제103조의37제7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각각 제100조의23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 제103조의37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23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0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0조(주택 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2일 이후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0조(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3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 ----- ----- ----- ----- -----.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중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 ----- ----- ----- ----- ----- ----- ----- ----- -----.
<신 설>	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신 설>

2. ~ 16. (생 략)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한다)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제28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8조의4제6항 제1호가목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

2. ~ 16. (현행과 같음)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가. -----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나. ~ 마. (생략)

2. ~ 9. (생략)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생략)

②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 경우 「조세

--- 시가표준액이 1억원(2025년 1월 2일 이후에 같은 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

나. ~ 마. (현행과 같음)

2. ~ 9. (현행과 같음)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3. (생략)

③ ~ ⑤ (생략)

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① ~ ⑤ (생략)

⑥ 법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에 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1. (생략)

2. 법 제103조의34에 따른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 제103조의35제1항의

---- 각 호, 제15항 및 제16항-----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법인지방소득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이 ---.

1. (현행과 같음)

2. -----

연결산출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연결세율”이라 한다)

<신 설>

법인지방소득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은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그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연결법인에 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1. 법 제103조의37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times (B \div C)$$

A : 각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 따라 계산한 각 연결법인별 소득에서 법 제103조의34에 따라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 결손금(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B : 조정 연결산출세액(각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의 합계액에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C :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각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법 제103조의37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다음 계산식
에 따라 계산한 금액

$D \times (E \div F)$

D : 결손금 조정세액(법 제103조의35제1항에 따른 연결산출세액에서 제1호의 계산식 B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E : 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공제액(「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 합쳐진 결손금과 법 제103조의34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 귀속액에서 공제된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F : 총 결손금 공제액(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공제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3. 법 제103조의37제7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연결법인: 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의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5항 각

<신 설>

<신 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법인별 연결산출세액을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⑨ 법 제103조의37제7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각각 제100조의23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 제103조의37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23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05 - 3837